

28 219

제 5호  
14호

자 체 통 제	기안처	산업국시량과 행정사기본법 선 선	전화번호	근 거 서 류 집 수 일 자
1			416	
아 전	시 량 과 장	산 업 국 장	부 시 장	시 장
국		전 결		
발 계 관 명	10.20	10.22		10.22
기 안 일	문사함임 농정국장	총무과장 농림과장	시행 년월일	보 존 년 한
1962 10.20				
분 류 기 호	전체통계	중 결	정 서 기 장	
경 수 참 유 신 조		발 신	시 장	
제 목	1962년산 추곡 수납 장소별 언자고시			
1962년산 추곡을 수납하기 위하여 1962년산 추곡수매				
요금 제그랑에 의거 일반에게 주리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 장소별 언자를 고시코리 전의 합니다				
(고시안)				
서울시 고시 제 71 호				
1962년산 추곡 수매 요금 제그랑의 주리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수납 장소별 언자를 지정하오니 각의 무리는 본기간에				
바질 없이 수납 하도록 고시함				
추곡 수납 장소별 언자				
구 별	장 소	1 회	2 회	3 회
동 대 분 구	동대분구 회정동 동신림미소안	11.27	12.5	12.18

185



1962年10月 日

# 1962年産秋穀收買要綱

農 林 部

51

184

263

# 1962年秋穀收買要綱

秋穀의 收穫期를當하여 農産物의 適正價格을 維持하여 農村經濟安定을 期하는一面 1963米穀年度 政府管理糧穀을 供給하기爲하여 1962年産秋穀收買(收納과買入)는 一般買入, 肥料交換糧穀, 交換糧穀 및 農地償還穀으로 區分하여 目標量收買完遂를 期하고자 이의 節次를 다음과같이 定한다.

## 1. 收納糧穀에對한納入告知書

收納糧穀의 納入告知書(交換糧穀, 農地償還穀의 收納)는市, (서울特別市는區)邑, 面長責任下에 10月 15日까지 納付義務者에게 發付함과 同時에 個人別收納簿를 作成備置한다.

## 2. 收買場所 및 日字

서울特別市長 및 各道知事は 農産物檢査所支所長(以下農檢이라略稱함)과 協議下에 倉庫施設, 檢査器具, 交通等諸般事情을 勘案하여 收買場所를 指定하고 收買場所別, 收買取扱日字를 一般에게周知되도록 告示함과 同時에 關係職員을 効率的으로 機動配置하여 本業務의 早期完遂를 期하도록 關係機關에 通報한다.

## 3. 收買施設 및 器具準備

決定된 收買場所에對하여는 檢査器具의 整備와 收買糧穀을 保管할 倉庫施設을 事전에 點檢하여 不備된것은 完全整備케하고 所要資材 및 器具를 具備하여 收買業務에 支障이 없도록 講究한다.

## 4. 現物出荷에對한 事前指導

(1) 市, 區, 邑, 面長은 脫穀, 乾燥, 調製包裝에 對한事前指導를 徹底히하고, 現物出荷에있어서는 部落單位로 順次別 計劃 出荷物을實施하여 收買場所에 있어서의 混亂과代金清算等に 支障이없도록 措置한다. 本秋穀은 檢査合格品에 限하여 收買할것이므로 不合格品の 出荷가 없도록 事前指導를 徹底히하라.

(2) 計劃出荷物에 의하여 出荷日字가 指定된 部落의 里洞長은 農協里洞組合長의 協同을 얻어 各種出荷糧穀을 所定日字에 出荷되도록 指導督勵한다.

#### 5. 現物出荷 및 收買

- (1) 各種收買糧穀은 1963年1月31日以內에 收買完了할計劃이니 市, 區, 邑, 面長은 此期間中에 出荷完了토록 積極督勵한다.
- (2) 一般買入糧穀은 買入目標量과 月別買入計劃量에 依據 生産農家의 出荷分을 買入하되 農家에 對하여 積極的인 宣傳啓蒙을 實施하여 目標量全量을 買入토록한다.
- (3) 收買場所에는 必히 다음의 關係職員立會下에 現物檢査整理와 事務處理에 正確을期하며 後日所管會計間의 代金清算에 違算없도록 措置한다.  
市, 區, 郡職員 및 邑, 面職員  
農檢職員  
郡農協職員
- (4) 出荷者는 必히 納入告知書 또는 肥料交換糧穀償還通知書를 收買場所에 持參한다.
- (5) 出荷糧穀은 每噸마다 出荷者의 住所姓名을 記入한 標識를 貼付하여 混同을 防止케하고 個人別出荷量에 있어서 噸未滿의 端數가有할時는 交換糧穀, 農地償還穀肥料交換糧穀等으로 區分하여 部落에서 噸單位로 區分包裝하고 그 內容에 對한 個人別數量을 明示한書面을 添付하여 收買場所에 出荷하고 部落全體出荷量에 있어서 噸未滿의 端數가有할境遇에는 그 端數대로 里洞長責任下에 出荷한다.
- (6) 收買場所에서의 單量未滿出荷分에 對하여는 市, 區, 邑, 面長責任下에 蒐集包裝하여 檢査를 받아야한다.
- (7) 出荷者는 出荷糧穀에 對하여 農產物 檢査法에 依한 檢査를 받은後 現物을 市, 區, 邑, 面長에게 引渡할것이며 檢査員은 收買對象糧穀에 對

하여 法에 所定된 檢査等級에 依한 糧穀檢査證(別表第一號書式)을 發行하고 收買對象等級品外의 糧穀은 再調出荷케 한다.

檢査證은 收買別 等級別, 數量 및 總數量을 記入하여 複寫三通을 發行한다.

糧穀檢査證은 正本은 出荷者에게 交付하고, 副本은 市, 區, 邑, 面(一般買入에 있어서는 市, 郡出張員에게) 原簿는 農檢에서 集計保管한다

(8) 市, 郡은 一般買入糧穀에 對하여 出荷者가 提示하는 保管業者가 確認한 檢査證正本과 이의副本 및 現物을 對照하여 糧穀買入證(別表第二號)書式을 發行한다.

買入證을 發行하는 市, 郡職員은 事前當該 農協에 印鑑을 届出하여야 한다.

(9) 市, 區, 邑, 面은 肥料交換糧穀을 除外한 收納糧穀에 對하여 出荷者가 提示하는 保管業者가 入庫確認한 檢査證正本과 이의副本 및 現物을 對照하여 交換糧穀 및 農地償還穀에 있어서는 糧穀收納證(別表第三號書式)을 各各發行한다.

前號收納證은 領收證에 代한다.

(10) 糧穀收納證은 二通을 作成하여 正本은 納付者에게 交付하고 原簿는 市, 區, 邑, 面에서 保管한다.

糧穀買入證은 四通을 作成하여 正本은 出荷者에게 交付하고, 副一은 農協, 副二는 邑面, 原簿는 市郡에서 保管한다.

農協은 糧穀償還條導入肥料及販賣實施要綱第四項第 號③에 依하여 肥料外上販賣代條償還穀引受證을 發行한다.

(11) 肥料交換糧穀은 糧穀收買日計表에 農協을 包含한 關係機關의 確認으로서 引受渡한다.

(12) 買入糧穀出荷者는 市, 郡으로부터 交付받은 糧穀買入證을 收買現場 農協에 提示하면 農協은 卽時代金을 現札로 支拂한다.

**6. 收買量糧穀保管**

- (1) 市, 區, 邑, 面은 前項에 依하여 收買된 糧穀을 個人別, 交換糧穀 農地償還糧穀 및 肥料交換別로 區分하여 關係帳簿을 整理한다.
- (2) 市長(서울特別市長)郡守는 市, 區, 邑, 面으로부터 提出한 糧穀收買日計表(別表第4號書式)에 依하여 收買場所別 當日收買糧穀을 關係 證憑書와 確認하여 保管業者에게 寄託保管한다.
- (3) 政府管理糧穀과 擔保融資糧穀을 別個倉庫에 保管케 함을 原則으로 하 나 倉庫가 不足되어 同一倉庫에 保管할 境遇에는 嚴正區分保管한다.

**7. 報告節次**

(1) 日 報

- 가. 市, 邑, 區, 面은 收買場所別 收買糧穀을 一般買入 肥料交換糧穀 交換糧穀回收農地償還別로 糧穀收買日計表 四通을 作成하여 市, 區, 邑, 面과 郡農檢 및 農協(一般買入 및 肥料交換)이 各1通式 保管 한다.
- 나. 市, 郡은 道에 道는 農林部에 區分別收買實績을 日報로 電文報告 (서울特別市 京畿道는 書面報告)한다.

(2) 月 報

- 가. 市, 郡은 管内收買日計表를 集計하여 收買實績月報(別表第5號書式)을 作成하여 道에 報告한다.
- 나. 서울特別市, 各道는 市, 郡의 月報를 各其對查集計하여 當月分을 翌月5日까지 必着하도록 農林部에 提出한다(別表第5號書式)
- 다. 農檢出張所는 各種收買糧穀의 檢查實績月報(別表第6號書式)을 支 所에 報告하고 本所는 各支所의 報告를 對查集計하여 翌月5日까지 農林部에 報告한다.

(3) 磨勘報告

- 가. 市, 區, 郡은 糧穀收買磨勘日로부터 15日以內에 最終磨勘報告書

를 서울特別市 및 道에 報告하되 이는 糧穀收買確認報告書(別表第7號書式)을 添付하여야 한다.

나. 서울特別市長 및 各道知事는 磨勘日로부터 20日以內에 最終磨勘 報告書를 農林部에 報告하되 이에는 糧穀收買確認報告書를 添付하 여야한다.

**8. 糧穀代支拂上注意**

別途指示없는限 買入代金支拂時 如何한 機關이나 個人을 莫論하고 如何한 名目이나 負債와 賦課金其他金其他負擔金을 相殺하거나 控除하지 못한다.

**9. 代金精算**

서울特別市長 및 各道知事로부터 提出되는 糧穀收買確認證에 依據所 管會計 또는 機關間에 清算한다. 農協의 清算要求書에는 서울特別市長 및 各道知事의 確認證을 添付하여야한다.

第一號書式

N.o							區分	買糧交農 入肥換地
<b>糧穀檢查證</b>								
西紀196 年 月 日 檢查								
住所	道	市郡	邑面	里洞	番地			
受檢者 ( 部落 ) 姓名								
穀種	一 等	二 等	三 等	四 等	等 外	計	備 考	
梗 粳								
計								
上記와如히檢查함								
農産物検査所 支所 出張所								
検査員職姓名								
保管業者確認								

注意 數字正誤時以本符以

註 正本是 出荷者에게 交付하고 副本은 市, 區, 邑, 面에 (一般買入에 있어서는 市, 郡出張所員에게) 原簿는 農檢에서 集計保管한다.

第一號書式

No.			
<b>糧穀買入證</b>			
住所	道	市郡邑	邑面里洞番地
賣渡者 ( 部落 ) 姓名			
穀種 等級		金 額	備 考
一 等 品	叭		
二 等 品	叭		
三 等 品	叭		
計	叭		
上記와 如히 賣下의 賣渡糧穀을 正히 買入함 (本證書는 買入糧穀의 代金 및 現物受領을 要求할時 또는 糧穀納付 確認을 要求할時 提出할것)			
市 郡 職 姓名			
検査確認	支所	出張所 職姓名	

註 1. 元本 出荷者 副一 農協 副二 市, 區邑, 面原簿서울特別市, 郡  
2. 検査確認欄에는 農檢이 確認한다.

44





(第本號書式)

# 1962年産秋穀收買實績月報

報告者 職姓名 ㊟

貴下 西紀196 年 月 日分

提出者 職姓名 ㊟

穀種別	區分別					合計	換算石數 合計精穀	穀種別	區分別					合計	換算石數 合計精穀
	一等品	二等品	三等品	等外品	合計				一等品	二等品	三等品	等外品	合計		
等級別	本月	累計	本月	累計	本月	累計	等級別	本月	累計	本月	累計	本月	累計	本月	累計
總							交換								
數							種穀								
分配農地償還穀							一般買入								
歸屬農地償還穀							肥料交換種穀								

註 1. 最終報告에 있어서 市郡倉庫別 邑面別 道는市郡別 報告의 寫本을 添付한 總括表를 各其所轄 上部機關에 提出할 것  
 2. 本表는 當月分을 末日現在로 翌月五日까지 提出할 것

(第六號書式)

(文書發送區分)第 號

# 糧穀檢查成績月報

報告者 職姓名 ㊟

貴下 作成者 職姓名 ㊟

西紀192 年 月 日(報告期限每月5日)

提出年月日 西紀192年 月 日

等級別 穀種	總數		一 等 品		二 等 品		三 等 品		備 考
	本月	累計	本月	累計	本月	累計	本月	累計	
	叭	叭	叭	叭	叭	叭	叭	叭	

本月中當所糧穀檢查成績上記와 如하음기 玆에 報告(通報)함

- 註 1. 種類別로 區分記入할 것  
 提出者로서 特記할 事項이 有할時는 備考欄에 記入할 것  
 2. 本表는 農檢機關이 作成하여 上部機關 및 市郡道에 提出하여야 한다  
 3. 農檢本所長은 道月別報를 農林部長官에게 提出할 것

40/

(第七號書式)

(發送文書番號)第 號

### 糧穀收買確認報告書

貴下 (報告機關)

西紀196 年 月 日

等級別 穀種	總數	一等品	二等品	三等品	計	備考
計						

上記糧穀은 1962年産秋穀 (一般買入分 肥料交換分 交換糧穀分 農地償還分) 으로 (買入 交換 收納) 保管함을 確認함

西紀196 年 月 日

道 糧政課長 姓名 ④

(郡 産業課長 姓名) ⑤

- 注意 1. 當年收買實績報告書를 提出할時 서울特別市長 및 各道知事는 收買實績報告書에 添付農林部長官에게 提出함
2. 本表에 確認은 道는 糧政課長 市, 郡은 産業課長이 確認한다

### 收買節次 (第一圖表)



